

#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. 14.

발의자 : 서일준 · 홍문표 · 김용판

박진 · 윤한홍 · 김승수

조명희 · 추경호 · 양금희

최형두 · 이용 · 하영제

이주환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· 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##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 · 도”라 한다)”를 “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 · 도”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·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”로, “해당 시 · 도”를 “해당 시 · 도 또는 대도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

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